

심판위원회규정

제정	2018. 2. 27.
개정	2019. 5. 22.
개정	2020. 1. 29.
개정	2022. 4. 9.
개정	2025. 1. 17.
개정	2025. 10. 2.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2.04.09.>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2.04.09.>

[제목개정 2022.04.0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04.09.>

② 협회는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③ 이 규정과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2.04.09.>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4.09.>

제4조(위원회의 기능)[제목개정 2022.04.0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4.09.>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09.>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교육(강습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09.>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경기규칙의 번역, 연구 및 보급에 관한사항
7.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4.09.>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09.>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삭제 2025.10.02.>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 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4.09.>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한요트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04.09.>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4.09.>

⑤ 심판위원회는 특정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하여 해당 대회 개최 전까지 다음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신규 2025.01.17><개정 2025.10.02.>

1. 소위원회는 심판위원회 위원 또는 심판위원회가 지명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이 된 심판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지만, 필요할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09.>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4.09.>

[제목개정 2022.04.09.]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2.04.09.>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회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4.09.>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4.09.>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04.09.>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개정 2022.04.09.>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04.09.>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분류한다. <개정 2022.04.09.>

1. 국제심판
2. 국제임파이어
3. 국가심판

가. 1급

나. 2급

4. 국가엄파이어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삭제 2020.01.29.>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8조와 제25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2.04.09.>

제17조(정보 제공) ① 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04.09.>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양성교육(심판/엄파이어강습회)

제18조(심판/엄파이어강습회 운영) ① 협회는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하여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04.09.>

② 심판/엄파이어강습회 운영은 협회 주최로 시행한다. <개정 2022.04.09.>

③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별표 1호와 같이 6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교육대상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22.04.09.>

2. 강사 구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협회는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강습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발전시켜 나간다. <개정 2022.04.09.>

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2회 이상(5명 이상 참석 시 개최) 심판강습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④ 교육 참가자는 협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⑤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9조(자격취득) ①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②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심판 2급

가. 국가심판강습회 수료 후 필기시험 70점 이상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다. <삭제 2022.04.09.>

2. 국가심판 1급

가. 2급 심판 유효기간(4년)동안 국가심판강습회에서 1급 심판 필기시험 80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WS IJ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 <개정 2025.01.17., 2025.10.02.>

나. 국가심판 2급 자격으로 참가한 대회(대한요트협회 주관 전문선수 전국

대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국제대회)의 심판위원장으로부터 1급 심판 자격에 필요한 평가서를 3회 받아야 하며 그 후 1급 국가심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1.17.>

다. <삭제 2025.01.17.>

3. 국가엄파이어

가. 국가엄파이어강습회 수료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70점 이상 <개정 2025.01.17.>

나. 국가심판 자격으로 대회(대한요트협회 주관 전문선수 전국대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국제대회) 3회 참가

다. 처음 국가엄파이어를 지원하는 후보자는 국가엄파이어 시험 합격 후, 4년 이내에 국가엄파이어 자격으로 참가한 엄파이어 방식이 적용되는 대회의 심판위원장으로부터 국가엄파이어 평가기준을 통과하는 평가서를 1회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1.17.>

라. <삭제 2025.01.17.>

③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즉시 또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2 호서식’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개정 2025.01.17.>

④ 자격연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01.17.>

1. 국가심판

가. 1급과 2급 국가심판의 자격을 연장하려는 자 또는 국제심판이었던 자가 국가심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심판자격 유효기간 이내에 국가심판 강습회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강습회 마지막 날 실시하는 필기시험

에서 자신이 원하는 급수에 해당되는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 유효 기간 동안 대한요트협회 주관대회 또는 국제요트대회의 심판으로 4회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2. 국가임파이어

가. 국가임파이어 자격연장 신청자는 임파이어 강습회에 참가하여 임파이어 필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4년의 임기동안 적어도 4번의 임파이어 방식이 적용되는 대회에 임파이어로 활동하여야 한다. 국가임파이어의 자격을 연장하려는 자 또는 국제임파이어였던 자가 국가임파이어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임파이어자격 유효기간 이내에 국가임파이어 강습회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파이어 강습회 마지막 날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 유효기간 동안 대한요트협회 주관 대회 또는 국제요트대회의 임파이어로 4회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⑤ 시험 중 부정행위, 신청서 허위기재를 한 사람은 해당 일로부터 4년 동안 심판 및 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강습회에 참가하거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기존 심판, 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 자격자는 보유한 자격을 박탈하고 협회 주최, 주관, 승인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⑥ <삭제 2025.10.02.>

⑦ <삭제 2025.10.02.>

제20조(유효기간) ① 자격의 유효기간은 해당 요건을 갖춘 다음, 심판자격에 대한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승인을 받은 해의 다음 년도부터 4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개정 2025.01.17., 2025.10.02.>

② <삭제 2025.01.17.>

③ <삭제 2022.04.09.>

④ 해외 근무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 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국제심판/국제엠패이어 자격신청 및 활동) 국제심판/국제엠패이어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하는 해의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2025.10.02.>

1. 월드세일링 세미나 필기시험 합격증 <개정 2025.01.17>
2. 월드세일링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월드세일링 불승인에 따른 사유 및 개선결과방안 보고서(해당자에 한함)

[제목개정 2025.10.02.]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2조(심판평가) ① 위원회는 각 대회 심판위원장이 제출한 대회보고서를 기준으로 심판들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협회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1.17.>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

다)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인 경우 <개정 2025.01.17.>

② <삭제 2025.01.17.>

제23조의2(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1.17.>

1. 심판이 제23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하고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의3(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23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17.><개정 2025.10.02.>

제24조(심판배정) ①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심판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람

이 그 대회 심판을 지명하며, 그 외의 대회에서는 해당 대회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02.>

② 협회의 심판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22.04.09., 2025.10.02.>

1. 상급 심판 3명 이상 (국제심판, 국제심판 시험 합격자, 1급 국가심판 또는 20회 이상 심판으로 대회에 참가한 자)
2. 중급 심판 2~3명 (국가심판 2급 자격으로 5회 이상 심판으로 대회에 참가한 자)
3. 초급 심판 1~2명 (국가심판 2급 자격을 가진 자)

③ <삭제 2022.04.09.>

제25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고, 협회 양식에 따라 대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

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9.>

② <삭제 2025.10.02.>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또는 편파 판정 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협회의 ‘정관’,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09.>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4.09.>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7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04.09.>

② 부적절한 행위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8조(심판의 포상 등) ① 협회는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협회 또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2.04.09.>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2.04.09.]

제29조(심판매뉴얼) 협회는 국제심판매뉴얼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급된 국가심판 2급, 3급은 자격 잔여기간 동안 2급으로 인정한다. 기존의 국가심판 1급은 1급으로 인정한다.

부 칙 (2019.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01.17.>

심판양성교육(심판/엄파이어강습회) 교육 및 시험과목

(총 12시간 이상)

영역	과목명
교육 및 시험과목	○ WS 경기규칙
	○ WS CASE BOOK
	○ WS 매뉴얼(심판/엄파이어)
	○ WS CALL BOOK
	○ 향의청문회 이론 및 실습
	○ 평가

[별지 제1호서식]

심판/엄파이어 강습회 참가 신청서

강습회 명							
기간			장소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영문		성별	(남, 여)			
소속/직위		사진 (3*4)					
주소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시험 구분	해당란에 “O”표기	국가심판 2급	국가심판 1급	국가엄파이어	미응시		
요트 경력 사항	선수 활동						
	심판 활동 및 교육 이수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일반1급 [] 일반2급					
본인은 대한요트협회가 진행하는 강습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작성일: _____

신청자: _____ (서명)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심판/엠펜아이어 자격 신청서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소속/직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희망 부여 연도		[] 당해연도
	휴대전화			[] 내년도
신청 자격		☐ 국가심판1급 ☐ 국가심판2급 ☐ 국가엠펜아이어 ☐ 국제심판 ☐ 국제엠펜아이어		
붙임서류		○ 국가심판2급 -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자격증 사본 (규정 제19조 2항 1호 참고) ○ 국가심판1급 (신규) - 평가서 (규정 제19조 2항 2호 (나) 참고) ○ 국가심판1급 (연장) - 중요 대회 심판 활동 증빙 (규정 제19조 4항 1호 참고) ○ 국가엠펜아이어 (신규) - 평가서 (규정 제19조 2항 3호 (다) 참고) ○ 국가엠펜아이어 (연장) - 중요 대회 엠펜아이어 활동 증빙 (규정 제19조 4항 2호 참고) ○ 국제심판/국제엠펜아이어 (규정 제21조) - 월드세일링 세미나 필기시험 합격증 - 월드세일링(W.S) 국제자격신청 제출 서류 일체 - 국제자격 불합격 사유 및 개선방안 보고서(자격미달로 3회 이상 불합격 한 경우 해당)		
관련 활동사항				
본인은 대한요트협회가 진행하는 자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자격을 신청합니다.

작성일: _____

신청자: _____ (서명)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심판 기피신청서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신청인	성명: 구분: ☐ 선수 ☐ 지도자 ☐ 선수관리담당자 (신청인 신분 ☒ 체크)
기피 심판	

기피 사유	
-------	--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3조의2(심판의 기피)제2항에 따라, 심판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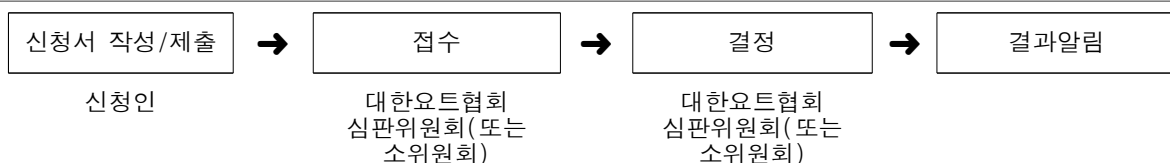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기피당한 심판)

대회명 * 경기명 기재	ex) 00000대회 (16강전)
소명 내용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3조의2(심판의 기피)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필요시)	
---------------	--

처리 절차

의견서 작성/제출



접수



결정



결과알림

기피당한 심판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또는
소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